

최고 인기상품 선정된 '미니홈피' 누구나 쓸 수 있다

작다는 뜻의 '미니'와 홈페이지의 줄임말 '홈피'의 합성어인 '미니홈피'는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가 게시판, 사진첩 등을 꾸미는 창 크기가 작은 홈페이지를 이른다. 미니홈피가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고 히트 상품으로 선정하는 등 네이버들에게 인기를 얻자, 개발자인 SK 커뮤니케이션 외에 다른 포털 사이트도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했다. 포털업체 중 하나인 프리챌은 '미니홈피'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SK로부터 항의를 받고 명칭을 '마이홈피'로 바꿨는가 하면 지난해 4월에는 도메인 이름을 미니홈피(minihompy.com)로 한 흠



페이지 제작 지원 사이트가 생겨 SK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SK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지만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싸이월드가 만든 '미니홈피'가 싸이월드 만의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특허법원 특허2부(부장 이성호)

는 지난 9월 13일 SK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미니홈피'에 대한 상표권 인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니홈피는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성질표시 표장'이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가 '싸이월드'를 고유한 서비스를 뜻하는 표장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반면 미니홈피는 싸이월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칭한 용어로, 이미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개인화된 홈페이지 또는 제공 서비스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 특허청, 특허넷 서비스 벤치마킹 줄이어

우리나라가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인 특허넷이 세계 각국 특허청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역내 특허청에 대한 정보화 협력사업의 담당자로 한국 특허청(청장 김종갑)을 선정한데 이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사업의 파트너로 한국 특허청을 선택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 각국 특허청의 주목을 받고 있다.

APEC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기능을 구현한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 정보화 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2002년 8월부터 개도국 특허행정 기술협력사업의 주 파트너로 한국을 만장일치로 선정하고 한국 특허청에 특별기금 40만불을 제공한 바 있다. 한국 특허청은 이렇게 마련한 APEC 특별기금을 사용하여 '02년부

터 '04년 동안, 태국, 폐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및 베트남 특허청에 대하여 정보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APEC 역내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금년 6월에 세계적 정보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인도 특허청도 한국 특허청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도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술 컨설팅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인도 특허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특허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한국 특허청을 방문하여 한국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 받겠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인도 특허행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5일, 기술컨설팅 최종 결과물을 인도 특허청에 전달하였고, WIPO는 전 세계 회원국들이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최종

결과물을 공식 문서화하였다. 이번 기술컨설팅 결과물은 우리나라 특허넷의 개발·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 검색 시스템 등 지재권 행정의 핵심 사업과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단계별 이행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 특허청뿐만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세계 각국 특허청의 향후 정보시스템 설정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특허청은 특허행정 정보화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의 국가의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를 대행하게 되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우리나라 특허권을 무심사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바 있다.

상표 사용 의사 없는 사람, 상표 등록 받을 수 없어

특허심판원(원장 송주현)에 의하면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의사가 없는 자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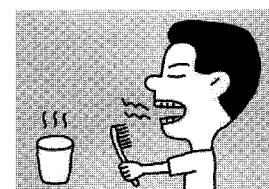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변리사의 자격만을 가진 자가 변호사업, 법무사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출원한 서비스표에 대하여 변리사의 자격만 갖춘 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서비스표를 변호사업이나 법무사업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2조에 서비스표의 정의로 규정된 'サービ

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할 의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표의 출원행위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상표법의 취지와는 달리 등록 주의(서비스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한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등록을 거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고 있어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용하려는 자도 서비스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사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중에 있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나, 그 동안 심사관행에 대해 점검을 필요로 하는 판결로 앞으로 허가 등을 요하는 업에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 결정시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등록을 거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상식

'입 냄새'가 고민이라구요?



대인관계에서 입 냄새는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최대 약점. 입 냄새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구강 질환

입 냄새의 90%는 혀의 백태, 치주질환, 충치, 구내 궤양 등 입안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때 고약한 냄새의 주범은 음식물 찌꺼기를 세균이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휘발성 황(黃). 풍치로 알려진 치주질환(잇몸병)도 입 냄새의 주 원인이다. 또 입 속을 정화하는 침 분비가 줄어도 입 냄새가 난다. 아침에 입 냄새가 나거나, 술 마신 후 입

냄새가 심한 것은 침 분비가 줄기 때문이다. 그 밖에 충치나 사랑니 주위의 염증, 입 안에 생긴 궤양도 입 냄새의 원인이 된다.

구강 외 질환

축농증, 편도선염 등 이비인후과 질병에 의한 입 냄새가 가장 흔하며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도 입 냄새가 난다. 당뇨, 만성 신부전, 만성 간질환 등 만성 병 환자에게서 나는 입 냄새는 지병으로 인해 몸에서 발생되

는 것으로 특히 말할 때 심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입 냄새를 없애려면 원인이 되는 질환부터 치료해야 한다.

입 냄새 예방법

- 식사 및 간식을 먹은 뒤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한다.
- 양치할 때 혀 뒷부분까지 구석구석 닦아 백태를 없앤다.
- 치실을 사용하고 치간 첫솔도 이용한다.

•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은 한다.

• 음식을 꼭꼭 씹어 침 분비를 왕성하게 한다.

• 대화를 즐겨하는 등 입 운동을 열심히 한다.

• 양파, 마늘, 파, 겨자 등 황 성분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피한다.

• 금연하고, 과음하지 않는다.

• 커피, 콜라 대신 녹차를 마시고 물은 하루 8잔 이상 마신다.

• 섬유소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는다.

국내 처음, 학교 법률 자문인 등장!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소속돼 학교의 법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법률 자문인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한국과학기술인(KAIST) 법률자문역으로 근무하는 박경신 미국 변호사(34). 그는 지난 9월 1일 정식 빌령을 받고 매주 금요일 대전으로 출퇴근하며 현장 근무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률과 관련한 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에서부터 학교 교칙정비·운영에 관한 법적사항, 학교가 연관된 소송 등을 담당하는 등 대내외적 문제들을 총괄 관리한다. 이를 위해 KAIST는 박 변호사를 대우교수(시간강사)로 빌령했다. 그는 교수로서 이번 학기 동안 '문화콘텐츠와 법'이라는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도 강의하는 1인2역을 소화하게 된다. 박 변호사는 KAIST에 학생으로 몸담을 뻔했던 인연도 갖고 있다. 그는 고교 졸업 후 KAIST 학부 과정 전신인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 기계공학과 86학번 학생으로 들어온 뻔했으나 미국으로 건너가 LA 고등학교에 재입학해 수석 졸업했다.

고교 졸업 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물리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UCLA로 자리를 옮겨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QAL 국 현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 후 99년 한국에 들어와 2002년까지 한동대학교에서 법학교수로 근무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경희대 강단에서 법학 강의를 했다. 그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대 부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변호사들이 국내 대학에 법률자문을 하기는 하지만 법무법인 소속으로 파트너십 관계에서 외부 자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형태의 법률자문역이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 해결과 시스템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